

- 2023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-

「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(1차)」 참여기업 모집

전라북도 선도기업의 국내·외 판로개척, 경쟁력 향상 및 시장성 확대를 위한 “제품 및 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원하는 선도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3. 6.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- 신청대상: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(※공고일 기준)
- 지원예산: 6억원
- 지원목표: 40건
- 사업기간: 협약 시작일로부터 종료일(최대 11월 30일)까지
- 지원규모: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% 이내(최대 5,000만원)이며,
기업부담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 - 단, 부가가치세(VAT) 지원 제외
 - 기업별 연간 5,000만원 이내 신청가능
 - 세부내용은 지원항목 참고
- 기타사항
 - ‘23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내용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
 - 협약기간 내에 목표 결과물 취득이 가능해야 하며,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불가 (※협약기간은 최대 11월 30일 이내)

2

지원항목

구 분	지 원 항 목
인증 취득 지원	<p>【제품 및 시스템 인증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규) 경쟁력 향상 및 시장성 확대를 위한 국내·외 제품 및 시스템 인증 - (연장) 기 취득한 국내·외 제품 및 시스템 인증에 대한 연장 비용 지원
지식재산권 확보 지원	<p>【지식재산권 확보 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특허, PCT 등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지원 <hr/> <p>【특허 사전선행기술조사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편선행조사 지원: 50만원 이내 - 심층선행조사 지원: 500만원 이내 <p>(※특허기술분석, 특허동향분석, 경쟁사분석, 주요특허분석 등)</p>
기업 및 제품 브랜드가치 향상 지원	<p>【SNS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연간 1회 (최대 800만원 이내)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NS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지원 <hr/> <p>【기업 인지도 향상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지면광고 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연간 5회 (최대 500만원 이내)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일간지 지면광고 지원: 50만원 이내/건 - 국내 산업잡지 지면광고 지원: 100만원 이내/건 <hr/> <p>【제품 판매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연간 2회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 카탈로그 지원: 800만원 이내 - 전자 카탈로그 지원: 500만원 이내

구 분	지 원 항 목
비즈니스 세일즈 지원	<p>【국내 전시회 참가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연간 3회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 면) 부스임차료, 장치임차료, 운송비 - (온라인) 전시회 참가비, 온라인 배너 제작비
	<p>【국외 전시회 참가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연간 2회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 면) 부스임차료, 장치임차료, 운송비, 통역비, 항공료(1인, 왕복/이코노미) - (온라인) 전시회 참가비, 온라인 배너 제작비
	<p>【수출 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및 국외 출장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연간 2회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료(1인, 왕복/이코노미), 통역비
	<p>【라이브 커머스 지원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한도: 300만원 이내/회 (최대 1,000만원 이내) 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대여료, 쇼호스트 및 장비운영인력 비용(외부)

3

추진절차 및 선정

○ 선정절차



○ 선정방법 :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

○ 평가항목

구분	평가항목	점수
필요성	사업의 적정성, 시급성	30점
사업성	목표의 명확성, 시장확대 역량, 기대효과	40점
과제운영	추진방법의 적합성, 추진의지, 사업비의 적정성	30점

4 사업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: 2023. 3. 6.(월) ~ 2023. 4. 14.(금)
- 접수기간: 2023. 4. 3.(월) ~ 2023. 4. 14.(금) 18:00까지
- 제출서류(※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www.jblc.or.kr에서 다운로드)

No	제출서류	비고
1	[서식 1호]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	필수
2	[서식 2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대표자 및 기업)	필수
3	[서식 3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실무책임자)	필수
4	[서식 4호] 윤리·청렴 서약서	필수
5	위탁기업 사업자등록증(※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	필수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- 작업지시서, 견적서, 참가신청서, 계약서, 전시배치도, 항공티켓 등 ※전시회 참가의 경우 주최 측에서 발행한 가이드북(표준 가격표) 제출 ※인증연장 신청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서 제출 	해당기업 필수

※ 각 항목별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상기 표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서류 목록상 명시된 항목으로 파일명 명명 후 제출 ex) 01. [서식 1호]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_(기업명)
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- 접수처: www.jblc.or.kr (전라북도 성장사다리 홈페이지)

- JBLC 회원가입 절차
 - 가입안내: JBLC(www.jblc.or.kr)검색 ▶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
 - ▶ 회원정보 입력 ▶ 회원가입 승인요청 ▶ 관리자 승인 ▶ 회원가입 완료
- 사업(과제)신청방법
 - 제출방법: [선도기업] 메뉴에서 [지원사업공고/신청] 확인하여 해당사업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
 - * 홈페이지 가입 및 사용 매뉴얼 참고
 - 사이트맵: [선도기업] ▶ [지원사업공고/신청] ▶ [제품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] ▶ [지원사업신청]
 - * 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 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사업 접수기간 종료 후 과제 등록은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.

5 선정제외 대상

- 지자체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(규격)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
 - 단, 제품분야별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
 - 지원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동일 전시회로 참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도 지원제외에 해당됨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
-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하기 사항일 경우
 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-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6 유의사항

- 선정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
- 필수 제출서류 외에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는 “0”점 처리됨
- 기업 및 제품 브랜드가치 향상지원, 비즈니스 세일즈(라이브커머스) 지원 결과물에 아래 문구 삽입

 <p>전라북도</p>	<p>본 (홍보영상, 광고, 방송, 카다로그)는 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“2023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” 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음. (제작일자: 2023년 00월 00일)</p>	 <p>JBTP (재)전북테크노파크</p>
--	---	---
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(사업종료 후 20일)내에 결과보고서를

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-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안내
 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(2020.1.1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출연금 등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(공공재정지급금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*** 제재부가금**

- ①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
7 문의처

-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팀 이주은 연구원
(☎ 063-219-2136 / e-mail: idoo@jbtp.or.kr)

(재)전북테크노파크와 본 사업은 **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”**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,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선정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내·외부로부터 청탁(부탁 포함)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업은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